

1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 2004. 08. 01.

개정 : 2019. 03. 01.

2023. 05. 01.

2023. 09. 01.

2023. 12. 27.

2024. 06. 05.

2024. 12. 13.

2025. 03. 17.

2026. 04. 01.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 범위 및 개정 검토)

제 2 장 자율준수 의지선언

제 3 조 (선언목적)

제 4 조 (선언방법)

제 3 장 교육 프로그램

제 5 조 (교육 과정)

제 6 조 (교육 효과성 평가)

제 7 조 (교육 강사 선정기준)

제 4 장 내부감시 체계

제 8 조 (위험성 평가)

제 9 조 (내부감시 및 점검 실시)

제 10 조 (내부감시 및 점검 준수사항)

제 11 조 (사전 업무협의 제도)

제 5 장 공정거래법규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 12 조 (책임 및 권한)

제 13 조 (제재 절차)

제 14 조 (제재 기준)

제 15 조 (자율준수 장려 포상)

제 6 장 효과성 평가

제 17 조 (효과성 평가 시행)

제 18 조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보고)

제 19 조 (효과성 평가 조직의 구성)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DL건설(이하 ‘회사’라 함)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및 개정 검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업무 환경 및 공정거래법규의 변화에 따라 연 2회 이상 개정 검토를 수행한다.

제 2 장 자율준수 의지선언

제 3 조 (선언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언방법)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당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 프로그램

제 5 조 (교육 과정)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필수 법규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 가.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부서 집중 교육
 - 나. 최고경영자 및 본사/현장의 임원·보직자 고급 교육
 - 다. 공무, 공사 등 현장실무자 대상 준법 교육
 - 라. 본사 비보직자 대상 준법 교육
 - 마. 신규 현장 보직자 대상 준법교육이수제도 운영
 - 바. 교육 미이수자 보수교육 및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자 특별교육
 - 사. 주요 이슈 발생 부서 등 교육 필요 시 수시교육
2.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 부서 및 인원을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3.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교육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 전담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현장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보다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6 조 (교육 효과성 평가)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효과성 평가 후 차기 교육 계획 수립 시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 건수, 학습 성과 달성 정도(Test점수 평균) 등의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제 7 조 (교육 강사 선정기준)

1. 사내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중 두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 가.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 나. 법무, 재무, 감사, 정보보호 등 업무 특성상 자율준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 다. 자율준수 전담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 라.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마.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바.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또는 ISO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 자격 소지자
 - 사.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
2. 사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 4 장 내부감시 체계

제 8 조 (위험성 평가)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위험성 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 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 예방행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위험성 평가 결과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중간

- 이상 위험성을 발견하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감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 기준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9 조 (내부감시 및 점검 실시)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한 내부감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법규 위반 위험성이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본부 및 그룹에 대해 상시 자율준수 내부감시 및 점검을 실시한다.
2. 수감부서는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내부감시 및 점검 활동(하도급법 자율점검 및 자진시정 프로세스(CP To-Do List), CP 자율준수점검, 현장 하도급 CP 점검, 협력업체 이슈 모니터링, 고위험부서 CP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내부감시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절차개선 등을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내부감시 및 점검 준수사항)

1. 내부감시 및 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직원은 내부감시 및 점검을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 라. 내부감시 및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자의 동의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마. 내부감시 및 점검 과정에서 권위적·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전 업무협의 제도)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의 사전 업무협의는 계약/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한 검토 요청에 의하며, 해당 업무 품의 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 및 긴급성, 관련 협의부서가 다수인 경우 사내문서를 통해 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업무 품의 시 내부문서 회신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경쟁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제출대상 자료의 검토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4. 회사 사전 업무협의 기구는 아래 표와 같다.

기구	역할	협의 방법	협의자
지주사 사전 협의체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 준수를 위한 협의	검토 요청 → 협의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자율준수 전담부서, 지주사 준법경영실
내부거래 협의체	계열사간 내부거래 진행 시 사전 법률검토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협의	검토 요청 → 협의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자율준수 전담부서, 법무지원팀(인감 날인 시 확인)
	내부거래 위원회 부의 사항 정리, 협의	검토 요청 → 협의 정리 → 검토 결과 통보	법무지원팀, 회계팀, 자율준수 전담부서, 외주구매팀(순차협의)
공정위 공시 및 기업결합 협의체	공정위 공시 및 기업 결합 안건 협의	검토 요청 → 협의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재무팀, 검토 요청 부서, 자율준수 전담 부서(합의)
기타 협의체	업무 수행 시 CP 사전 검토가 필요한 모든 사항(법 위반 해당 여부 및 준수 방법 등)	검토 요청 → 협의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검토 요청부서, 자율준수 전담 부서 (해당업무 주관부서)

제 5 장 공정거래법규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제 12 조 (책임 및 권한)

1. 자율준수 관리자

가. 내부감시 또는 점검 보고서 검토 시 본사 및 현장의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요구

나.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위반자의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2. 자율준수 전담부서

가.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 기준 수립

나.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HRC 회부 의뢰

다. 제재 조치 현황 기록 관리

제 13 조 (제재 절차)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인사총무팀 등 유관부서와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 직원이 속한 부서의 부서장은 시정조치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 자율준수 전담부서장은 시정조치서 및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사항을 분석하여 자율준수협의회 또는 HRC에 상정한다.
4. 자율준수협의회 또는 HRC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14 조 (제재 기준)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 필수 법규 위반행위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저해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시키거나 회사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손실의 정도 및 위반관련 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제재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제재 원칙
위반 행위자	경고장	시말서 징구 또는 HRC 회부 (견책 이상) CP자율준수점검 감점실시	- 경고장 발부(자율준수 관리자) - 시말서 징구 (전담부서장→(해당본부)→인사부서 통보) - HRC 회부(견책 이상 징계를 요하는 경우) - 관리/주의의무 준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CP자율준수점검 One Strike Out 1) 조직 연평균 참여율/성적 대상 제외(포상제외) 2) 법 위반 대상조직, 책임자 공지(매분기, 연간)
관리 책임자 (팀장, 임원)			
컴플라이언스 저해자	경고	CP자율준수점검 감점실시	- 교육 2회 이상 불참 1) 조직 연평균 참여율 1% 감점 2) 개인 종합 성적 2% 감점 - 무단 불참 1) 조직 연평균 참여율 2% 감점 2) 개인 종합 성적 3% 감점

- 가. 법 위반 행위자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하는 경우 HRC에 회부한다. 이 경우 관리·주의의무 준수 여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1차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준수협의회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HRC에 회부 가능하다.
- 다. 법 위반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 라.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자율준수 장려 포상)

1. 신고 및 제보에 의하여 법 위반이 예방된 경우 회사 기여에 상응하는 장려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자율준수 점검, 활동 결과 우수 준수자, 팀, 현장에 대해서 공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포상조치는 사규,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제12조 제재 기준에 속한 조직 및 임직원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효과성 평가

제 16 조 (효과성 평가 시행)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이 지침 포함) 및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내용의 충실성 확보, 최신성 유지, 활용 편의성
 - 나.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및 예산과 인력의 지원
 - 다.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격, 책임과 권한
 - 라. 자율준수 교육 계획 수립, 시행, 효과성 평가
 - 마. 위험성 평가 시행(CP점검 등), 사전 업무 협의 제도의 운영, 직접 보고 체계 및 제보시스템의 운영
 - 바.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2. 평가 주체 : 자율준수 관리자(자율준수 전담부서) 자체 평가, DL CP 운영 T/F 평가, 필요 시 외부 평가(공정경쟁연합회 등 전문기관)
3. 평가 주기 : 반기 1회 이상
4. 평가 후 개선사항 도출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후 다음연도 CP 운영 계획에 반영

제 17 조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보고)

1. 자율준수 전담부서 → 자율준수 관리자 (연 2회 이상)
 - 정기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전략과제 등) 이행실적 보고
 - 수시 : 교육, 질의/자문, 점검, 지주사 정책, 기업집단 규제정책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사항 중 긴급성, 중요도에 따른 보고
2. 자율준수 관리자 → 대표이사, 이사회 (연 2회 이상)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3. 외부 평가 기관 → 자율준수 관리자 → 대표이사, 이사회 (필요 시)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점검 결과보고

제 18 조 (효과성 평가 조직의 구성)

1.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하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하고 적격성을 평가하여 최종
구성한다.
 - 경력요건 : 자율준수 전담부서원, 공정거래 법무 윤리경영 등 자율
준수 프로그램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
 - 자격요건 :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격증(CCP등) 소지자, ISO37301인증
심사원 또는 내부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자
2. 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자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하여는 효과성 평가를 배제한다. 단, 평가자외 효과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이 부재하거나 자율준수 관리자가
별도 허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 정) 이 지침은 202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기록관리) ① 이 지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및 문서관리 지침에 따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과 관련한 문서 파일(File)목록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문서 File 목록

[illegible]